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DB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06.02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06.05**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 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5.06.02)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코드: 58646)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D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95% + Call x 5%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투자전략

▪ 철저한 기업분석 및 차별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업가치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여 장기 투자합니다.

▪ 가치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저평가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및 개별종목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조정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95% + Call x 5%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1.50	0.72	1.38	1.503	252	412	580	942	2,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없음	2.275	1.495	1.59	2.275	233	451	651	1,047	2,19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1.14	0.36	1.05	1.140	166	288	416	692	1,5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575	0.795	1.18	1.577	162	331	510	893	2,03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총비용 예시는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 C1은 이연판매보수(CDSC)제도가 적용되어 최초매입일로부터 4년 경과 후 종류 C5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495%에서 0.8%로 변경됩니다. 상기 총비용 예시는 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4)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2023/07/21~ 2024/07/20	최근2년 2022/07/21 ~ 2024/07/20	최근3년 2021/07/21 ~ 2024/07/20	최근5년 2019/07/21 ~ 2024/07/20	설정일 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5.16	7.64	8.66	-2.49	8.63	5.33
비교지수	2006.7.21	7.36	8.03	-4.31	5.82	3.38
수익률변동성	2006.7.21	13.20	14.20	14.31	18.97	18.78

(주1) 비교지수 : KOSPI*95% + Call *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_가치중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관영	1980	책임 (팀장)	42	3,628	2.80	7.26	3.36	8.56	10년 1개월
박일규	1984	부책임 (팀장)			-	-			3년 3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 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6개, 운용 규모는 719억 입니다.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table>
<tr><td></td><td>▪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td></tr>
<tr><td>주요투자위험</td><td>
<table>
<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th></tr>
<tr><td>원금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주식가격 변동위험</td><td>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td><td>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r><td>매입방법</td><td>▪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d>환매방법</td><td>▪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r><td>연금저축 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td><td>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퇴직연금 제도의 세제</td><td>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td></tr>
</tabl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있는 종류 C1 수익증권 최초매입일로부터 4년 경과 후 종류 C5수익증권으로 전환되며 판매보수는 1.495%에서 0.8%로 변경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DB자산운용 주식회사(02-787-3700) / 홈페이지 : www.db-asset.co.kr</td></tr>
</table>

<table>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5.06.05</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3">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후취(B)</td><td>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8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8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7">기타</td><td>보수체감(CDSC)</td><td>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td></tr>
<tr><td>고액, 전문투자자 등(I)</td><td>고액거래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펀드, 랩(F)</td><td>펀드가 투자 또는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주택마련(H)</td><td>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개인연금(P)</td><td>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입니다.</td></tr>
<tr><td>퇴직연금(P2)</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db-asset.co.kr)

[목차]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5864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9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686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C-I)	924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48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722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751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5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58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58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5858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A224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6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AW043
수수료선취-온라인(A-E)	BT3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54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54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54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542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지칭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5864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90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686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C-I)	924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48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722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751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5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58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58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5858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A224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6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AW043
수수료선취-온라인(A-E)	BT3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E54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E54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E54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E542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06.7.21	최초 설정
2007. 5. 9	종류형 펀드로 신탁계약변경
2007.10.11	신탁계약변경(Class C-E, C-H 추가)
2007.12.27	신탁계약변경(투자대상 추가)
2008.5.6	신탁계약변경(투자대상 추가-주식선물 추가)
2008.10.23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관련 신탁계약변경
2009.5.3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변경) - 투자신탁명 변경 :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주식투자신탁 제1호 =〉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09.7.13	- 투자신탁명 변경 : 동부TheClassic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동부더클래식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변경
2010.2.12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3.24	집합투자규약 변경(Class C2수익증권 가입자격 추가 및 판매보수 인하)
2010.4.2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0.5.3	집합투자규약 변경(판매보수 인하)
2010.8.19	집합투자규약 변경(클래스명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2010.9.29	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신탁명 변경 : 동부더클래식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2010.10.18	집합투자규약 변경(CDSC적용 및 일부 클래스의 판매보수 정률식 인하)
2010.12.28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전용클래스 소득공제요건 일부 수정
2011.4.1	집합투자규약 변경(클래스 추가 : Class B)
2011.9.26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위험등급 상세설명 일부 추가
2012.8.27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2.9.19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기업공시서식 변경 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개정 반영: 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수시공시)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2.02.22)사항 반영
2013.9.13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법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2014.3.17	- 집합투자규약 변경(S클래스신설)
2014.5.28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한성->정상진) - 운용담당 팀 변경(리서치팀 -> 주식운용팀)
2014.9.19	- 집합투자규약 변경(S-I클래스신설)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및 규약변경 반영
2014.12.5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예정 안내(2014.12.22시행/HSBC펀드서비스->외환펀드서비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 반영
2015.5.20	- 책임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기호삼 -> 정상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정상진 -> 한용남
2015.7.29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투자전략 내용보완, 규약변경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5.10.1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정상진 -> 이학문)
2016.7.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1등급->3등급)
2016.7.30	- 집합투자규약 변경 ㅇ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ㅇ 채권 및 어음 신용평가등급관련 문구 수정 ㅇ 환매수수료 삭제 ㅇ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15시->15시 30분)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 규약 변경 법개정사항 반영
2016.10.14	-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이학문 -> 이훈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한용남 -> 기호삼
2017.7.28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Class A-E신설
2017.8.11	부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 (기호삼-> 이승훈)
2017.11.1	집합투자업자 명칭 변경에 따른 펀드명, 홈페이지주소 변경 · 동부자산운용 -> DB자산운용 ·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DB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 · www.dongbuam.co.kr ->www.db-asset.co.kr
2018.6.2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일부변경 ("거래소 중소형주 및 코스닥종목 투자비중은 주식투자비중의 30% 이상 유지" 등 삭제)
2018.7.27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2019.1.2	- 책임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 이훈구 -〉 이승훈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이승훈 -〉 정관영
2019.7.29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2019.9.16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정 및 투자설명서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변경 및 투자설명서 반영
2020.8.12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단순 문구 수정) - 집합투자규약 변경 반영(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 위험등급 변경(3등급→2등급)
2020.11.17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일부 종류형 수익증권 판매보수 변경
2020.12.29	모자형 구조 자집합투자기구 추가(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2021.8.4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2022.8.2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규약 변경(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3.7.28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이승훈 → 정관영, 부책임: 정관영 → 이재환)
2023.8.9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2.20 시행) - 집합투자규약 변경(Class C-P, C-PE, C-P2, C-P2E 신설)
2024.4.19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이재환 → 박진영)
2024.8.2	-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 및 결산일자 업데이트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4.1.1 시행)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4.3.1. 시행)
2024.8.30	금융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2024.08.01 시행 / 종류 S, S-I 수익증권 정의 변경)
2025.6.5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박진영 → 박일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D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1층(대표전화: 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5.05.15 기준)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정관영	1980	책임 (팀장)	10년 1개월	- D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팀(현직) - IBK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브레인투자자문 주식운용팀
박일규	1984	부책임 (팀장)	3년 3개월	- D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주식리서치팀(현직) -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맥쿼리신탁운용 주식리서치팀 -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아샘투자자문 주식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_가치중소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관영	1980	책임 (팀장)	42	3,628	2.80	7.26	3.36	8.56
박일규	1984	부책임 (팀장)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 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6개, 719억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홍현기	2006.07.21 - 2010.04.26
이준혁	2010.04.27 - 2012.08.26
기호삼	2012.08.27 - 2015.05.19
정상진	2015.05.20 - 2015.10.15
이학문	2015.10.16 - 2016.10.13
이훈구	2016.10.14 - 2019.01.01
이승훈	2019.01.02 - 2023.07.27
정관영	2023.07.28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한성	2012.09.19 - 2014.05.27
정상진	2014.05.28 - 2015.05.19

한용남	2015.05.20 - 2016.10.13
기호삼	2016.10.14 - 2017.08.10
이승훈	2017.08.11 - 2019.01.01
정관영	2019.01.02 - 2023.07.27
이재환	2023.07.28 - 2024.04.18
박진영	2024.04.19 - 2025.06.04
박일규	2025.06.05 - 현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5.05.15 기준)**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정관영	1980	책임 (팀장)	10년 1개월	- D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주식운용팀(현직) - IBK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브레인투자자문 주식운용팀
박일규	1984	부책임 (팀장)	3년 3개월	- D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주식리서치팀(현직) -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맥쿼리신탁운용 주식리서치팀 -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아샘투자자문 주식팀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주식형_가치중소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억)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관영	1980	책임 (팀장)	42	3,628	2.80	7.26	3.36	8.56
박일규	1984	부책임 (팀장)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본부운용체제로서 상기 운용현황은 해당 운용본부 전체의 값을 나타냅니다.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6개, 719억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승훈	2020.11.17 - 2023.07.27

정관영	2023.07.28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정관영	2020.11.17 - 2023.07.27
이재환	2023.07.28 - 2024.04.18
박진영	2024.04.19 - 2025.06.04
박일규	2025.06.05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투자신탁 보수(연,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	0.7325	0.72	0.03	0.0175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가입 투자자	납입금액의 0.5% 이내	-	0.7325	0.36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제한없음	-	-	0.7325	1.495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C1 를 1 년 이상 보유	-	-	0.7325	1.245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C2 를 1 년 이상 보유	-	-	0.7325	0.985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C3 를 1 년 이상 보유	-	-	0.7325	0.895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C4 를 1 년 이상 보유	-	-	0.7325	0.800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가입 투자자	-	-	0.7325	0.795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 (C-I)	납입금액 50 억 이상 가입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	-	0.7325	0.04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랩(C-F)	집합투자기구 및 Wrap계좌 전용	-	-	0.7325	0.00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장기주택마련 저축가입 대상자	-	-	0.7325	1.00	0.03	0.0175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제한없음	-	환매금액의	0.7325	0.75	0.03	0.0175

			1.0%이내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0.7325	0.345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	0.7325	0.03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	-	0.7325	0.78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	-	-	0.7325	0.39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0.7325	0.81	0.03	0.01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0.7325	0.405	0.03	0.0175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

료		**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B)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8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8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 후취형(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4 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 년 4 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CDSC)	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 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고액, 전문 투자자 등(I)	고액거래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랩(F)	펀드가 투자 또는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택마련(H)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23 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1호[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 제2호[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DB진주찾기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이상(가치주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채권 35%이하

	투자목적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철저한 기업분석 및 차별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업가치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여 장기 투자합니다. ▪ 가치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저평가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및 개별종목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조정합니다.
	비교지수	KOSPI x 95% + Call x 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국내주식 중 가치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60%이상	신탁계약서 제3조 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유동성자산	10% 이하 (단,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초과 가능)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

나. 모집합투자기구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로서 PBR(주가순자산 비율) 및 ROE(자기자본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가치주) 가. 동일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 대비 높은 ROE(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나. 동일 ROE(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대비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 다만, 가치주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②	채권	35%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국채선물 등에 투자하여 헷지목적 또는 헷지 외의 목적으로 투자함)
⑥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⑦	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30% 이하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기구		
⑧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⑨	증권대여 주1)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및 환매조건부매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②,③,④ 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②,③,④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5%이하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동일회사 발행 지분증권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거래 상대방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자집합투자기구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x 95% + Call x 5% 입니다.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비교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DB자산운용 홈페이지(www.db-asset.co.kr)에서 확인가능)

나. 모집합투자기구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가치주에 장기 투자

- 철저한 기업분석 및 차별화된 리서치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업가치대비 저평가된 가치주를 발굴하여 장기 투자
  - 섹터 애널리스트별로 담당섹터에 대해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
  -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 발굴

* 가치주란 당사 리서치의 이익추정모델에 근거하여 업종평균대비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낮은 PER(주가순이익비율), 높은 배당수익률의 주식을 말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 및 조정

- 가치주 중심으로 시가총액, 저평가 등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 시장상황 및 개별종목의 주가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조정
  -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 시 분할 매도
  - 회사의 고유경쟁력,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 시 종목 교체

(3) 위험관리

- 섹터별, 종목별 투자한도관리를 통한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위험 축소
- 적극적인 자산배분 지양과 가치주와 장기성장주가 혼합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주식시장과의 괴리도 축소 및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

(4) 비교지수 : KOSPI x 95% + Call x 5%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비교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DB자산운용 홈페이지(www.db-asset.co.kr)에서 확인가능)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 입니다.

가. 일반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

	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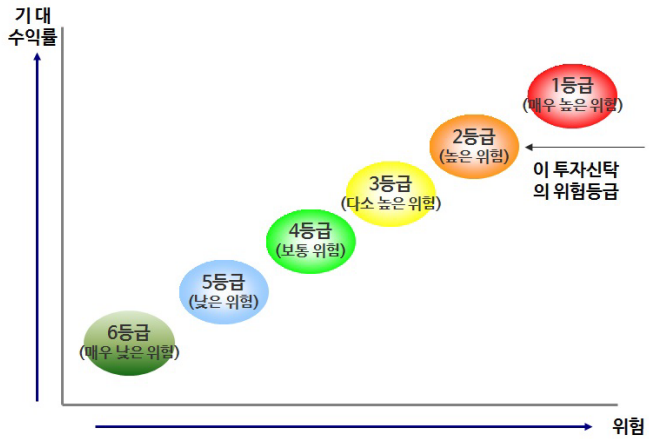
다. 기타위험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60%이상 투자하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DB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을 사용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최근 결산일(2024.07.20)기준 변동성은 **33.95%**로 아래 기준에 의하여 **2등급(높은 위험)**입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

변경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2006.07.21 최초설정		1
2016.07.02	1	3
2020.08.12	3	2

등급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부동산, 특별자산,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투기등급 CP(B+등급이하),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법 제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토대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단, 수익률의 VaR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ELF, 레버리지펀드, 인버스펀드,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60}$)를 곱해 산출

5.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며,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략상 헤지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지수 추종을 운용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추종지수의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 특별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투자자산의 신용등급, 담보수준, 신용보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험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DB 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준투자권유준칙 'Ⅱ. 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Class C1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Class C2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lass C3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보수체감(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Class C4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C-I)	납입금액 50억이상 가입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집합투자기구 및 Wrap계좌 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가입 투자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가입제한 없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후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3 시 30 분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4)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2) 오후 3 시 30 분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 [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1)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 클래스에 한합니다.

(2)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 일에 전환처리합니다.

(3)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5)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위 전환방법의 (1)에 불구하고 2010 년 10 월 18 일에 종류 C1 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부터 종류 C5 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0 조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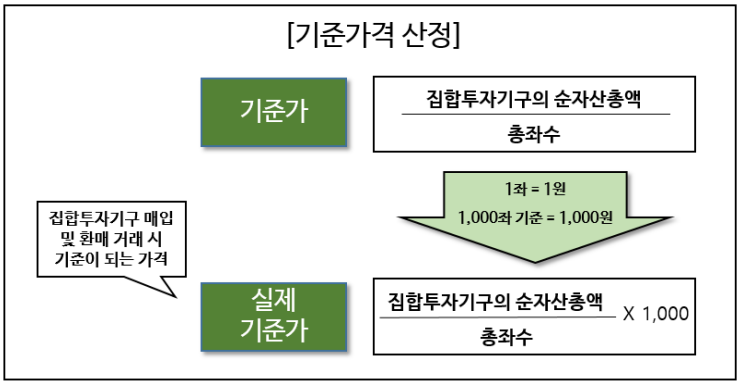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1좌당 1원)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 · 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b-asset.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평균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제한없음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C1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C2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C3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C4 수익증권 1년 이상 보유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 (C-I)	납입금액 50억이상 가입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집합투자기구 및 Wrap계좌 전용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가입 투자자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가입제한 없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환매금액의 1.0%이내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투자자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가입 투자자 전용	납입금액의 0.5%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종류)	지급비율(연간, %)									
	운용	판매	수탁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 비용 주1)	총 보수·비용 비율 TER2)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3주3)	동종유형 총 보수주4)	증권거래 비용주5)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7325	0.72	0.03	0.0175	1.50	0.003	1.503	1.503	1.38	0.19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7325	0.36	0.03	0.0175	1.14	0.000	1.140	1.140	1.05	0.1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7325	1.495	0.03	0.0175	2.275	0.000	2.275	2.275	1.59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7325	1.245	0.03	0.0175	2.025	0.000	2.025	2.025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7325	0.985	0.03	0.0175	1.765	0.000	1.765	1.765		0.1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7325	0.895	0.03	0.0175	1.675	0.000	1.675	1.675		0.1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0.7325	0.800	0.03	0.0175	1.58	0.003	1.583	1.583		0.1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7325	0.795	0.03	0.0175	1.575	0.002	1.577	1.577	1.18	0.1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C-I)	0.7325	0.04	0.03	0.0175	0.82	0.002	0.822	0.822		0.2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0.7325	0.00	0.03	0.0175	0.78	0.000	0.780	0.780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0.7325	1.0	0.03	0.0175	1.78	0.000	1.780	1.780		0.190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0.7325	0.75	0.03	0.0175	1.53	0.000	1.530	1.530		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7325	0.345	0.03	0.0175	1.125	0.000	1.125	1.125		0.1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고액(S-I)	0.7325	0.03	0.03	0.0175	0.81	-	0.81	0.8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7325	0.78	0.03	0.0175	1.56	-	1.56	1.56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7325	0.39	0.03	0.0175	1.17	-	1.17	1.17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7325	0.81	0.03	0.0175	1.59	-	1.59	1.59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0.7325	0.405	0.03	0.0175	1.185	-	1.185	1.185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3.07.21~2024.07.20)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비용 예시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 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TER)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하며, A, A-E, C, C-E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23.07.21~2024.07.20)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지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의 비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비용 예시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7) 금융비용 종류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천원)
증권거래비용	8.629
금융비용	-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52	412	580	942	2,018
수수료선취-온라인(A-E)	166	288	416	692	1,5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자동전환시	233	451	651	1,047	2,1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C-I)	84	173	266	466	1,0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80	164	252	442	1,0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62	331	510	893	2,0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182	374	575	1,008	2,295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262	432	610	994	2,13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15	236	364	637	1,4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160	328	504	884	2,0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20	246	378	663	1,5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163	334	514	901	2,05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21	249	383	671	1,528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Class B 및 Class S의 경우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lass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 년 단위로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 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 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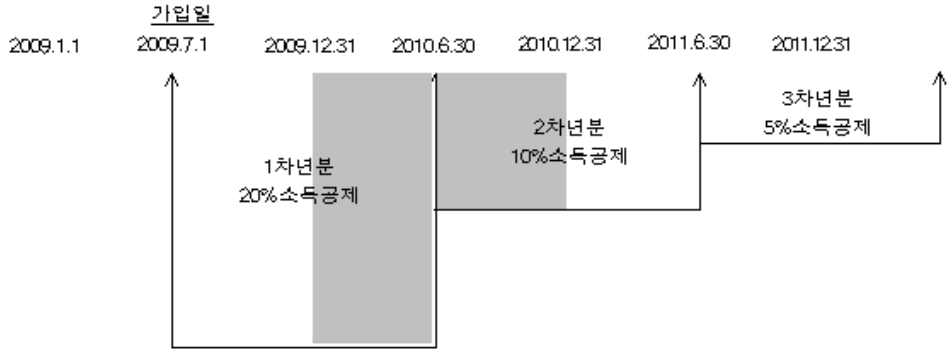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

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의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소득공제 예시 :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5) 기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Class(Class C-H) 세제혜택

만 18세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① 가입자격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제 혜택	-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연간 불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 (단, 소득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2호1)의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하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름.)
비과세 요건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 부여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단,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합계금액 기준)

1)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2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1)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없는 경우 (2)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해당됨 ※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근로소득 공제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세액 추징하는 경우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 저축납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8%)에 상당하는 금액 -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추징함. 단, 저축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 추징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 투자신탁을 이용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세제 혜택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저축대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등

ㅇ 통장표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

ㅇ 가입대상: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ㅇ 불입금액: 분기당 300만원 이내

ㅇ 계약기간: 7년 이상

ㅇ 계약유지: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6)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 저축 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 또는 300만원(직

	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일반해지시 과세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회계기간 말일(2024.07.20) 기준으로 300억원 이하인 경우로 회계감사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단위: 원)

항 목	제18기	제17기	제16기
	2024.07.20	2023.07.20	2022.07.20
운용자산	7,576,410,922	3,933,468,201	3,668,557,371
유가증권	7,420,370,622	3,854,390,472	3,596,712,872
현금 및 예치금	156,040,300	79,077,729	71,844,49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8,006,227	14,294,180	15,745,938
자산총계	7,604,417,149	3,947,762,381	3,684,303,30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1,216,341	14,675,469	14,845,882
부채총계	81,216,341	14,675,469	14,845,882
원본	7,825,668,661	4,568,881,345	4,674,952,364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302,467,853	-635,794,433	-1,005,494,937
자본총계	7,523,200,808	3,933,086,912	3,669,457,427
운용수익	400,793,290	408,302,535	-951,595,282
이자수익	2,595,611	1,986,540	668,939
배당수익	264,185,847	82,656,679	79,679,645
매매평가차손익	134,011,832	323,659,316	-1,031,943,86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62,102,013	56,898,751	65,647,995
관련회사보수	61,985,753	56,789,841	65,537,57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6,260	108,910	110,420
당기순이익	338,691,277	351,403,784	-1,017,243,277
매매회전율	0	0	0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8기 0원, 17기 0원, 16기 0원 발생)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8기 0원, 17기 0원, 16기 0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주)		거래금액(A)	거래비용 주)	
		금액(B)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비율(B/A)
주식	8,400,165,959	8,628,541	0.10272	7,377,568,419	7,374,355	0.09996
합 계	8,400,165,959	8,628,541	0.10272	7,377,568,419	7,374,355	0.09996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주 2)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거래금액에 거래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비용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97,257	5,243,175,702	64,636	3,128,985,194	4,231,367,580	73.95	31.99

주)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합니다.

나. 재무상태표(단위 : 원)

항 목	제18기	제17기	제16기
	2024.07.20	2023.07.20	2022.07.20
운용자산	7,576,410,922	3,933,468,201	3,668,557,371
현금및예치금	156,040,300	79,077,729	71,844,499
현금및현금성자산	156,040,300	79,077,729	71,844,499
유가증권	7,420,370,622	3,854,390,472	3,596,712,872
수익증권	7,420,370,622	3,854,390,472	3,596,712,872
기타자산	28,006,227	14,294,180	15,745,93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7,752,843	14,166,609	15,685,889
미수이자	253,384	127,571	60,049
자 산 총 계	7,604,417,149	3,947,762,381	3,684,303,309
기타부채	81,216,341	14,675,469	14,845,882
해지미지급금	9,019,990	0	254,914
미지급운용수수료	11,376,914	7,049,136	7,007,005
미지급판매수수료	7,201,813	7,153,813	7,124,092
미지급수탁수수료	465,679	288,421	286,731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71,537	168,215	167,140
수수료미지급금	10,400	5,800	6,000
미지급이익분배금	52,870,008	10,084	0
부 채 총 계	81,216,341	14,675,469	14,845,882
원 본	7,825,668,661	4,568,881,345	4,674,952,364
이익잉여금	-302,467,853	-635,794,433	-1,005,494,937
자 본 총 계	7,523,200,808	3,933,086,912	3,669,457,427
부채 및 자본 총계	7,604,417,149	3,947,762,381	3,684,303,309

총좌수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_운용	7,827,098,527	4,446,924,334	4,621,008,744
기준가격 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_운용	970.39	887.75	797.24

다. 손익계산서(단위 : 원)

항 목	제18기 2023.07.21 ~ 2024.07.20	제17기 2022.07.21 ~ 2023.07.20	제16기 2021.07.21 ~ 2022.07.20
운용수익(운용손실)	400,793,290	408,302,535	-951,595,282
투자수익	266,781,458	84,643,219	80,348,584
이자수익	2,595,611	1,986,540	668,939
배당금수익	264,185,847	82,656,679	79,679,645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56,356,273	339,576,272	670,239
지분증권매매차익	4,892,106	14,881,980	670,239
지분증권평가차익	151,464,167	324,694,292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2,344,441	15,916,956	1,032,614,105
지분증권매매차손	16,875,575	6,726,219	50,565,622
지분증권평가차손	5,468,866	9,190,737	982,048,483
운용비용	62,102,013	56,898,751	65,647,995
운용수수료	31,894,121	27,293,433	31,517,096
판매수수료	28,025,636	27,728,766	31,978,858
수탁수수료	1,305,145	1,116,692	1,289,800
사무수탁수수료	760,851	650,950	751,821
기타운용비용	116,260	108,910	110,42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_운용	338,691,277	351,403,784	-1,017,243,277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DB진주찾기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_운용	71.01	77.09	-215.8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운용펀드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3,390	3,390	1,567	1,546	1,873	1,837	4,621	3,684
2022/07/21~2023/07/20	4,621	3,684	248	204	422	348	4,447	3,948
2023/07/21~2024/07/20	4,447	3,948	4,088	3,886	708	639	7,827	7,595

(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2,545	2,545	186	169	379	353	3,293	2,585
2022/07/21~2023/07/20	3,293	2,585	191	152	204	163	3,280	2,824
2023/07/21~2024/07/20	3,280	2,824	165	143	486	422	2,959	2,743

(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25	25	12	11	35	31	11	9
2022/07/21~2023/07/20	11	9	1	1	0	0	13	11
2023/07/21~2024/07/20	13	11	8	8	7	6	14	13

(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8	8	0	0	12	12	0	0
2022/07/21~2023/07/20	0	0	0	0	0	0	0	0
2023/07/21~2024/07/20	0	0	0	0	0	0	0	0

(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161	161	22	20	9	9	233	183
2022/07/21~2023/07/20	233	183	37	31	30	24	240	207
2023/07/21~2024/07/20	240	207	24	20	97	85	167	155

(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43	43	0	0	0	0	58	46
2022/07/21~2023/07/20	58	46	0	0	0	0	58	50
2023/07/21~2024/07/20	58	50	0	0	0	0	58	54

(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0	0	0	0	0	0	0	0
2022/07/21~2023/07/20	0	0	0	0	0	0	0	0
2023/07/21~2024/07/20	0	0	0	0	0	0	0	0

(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0	0	0	0	0	0	0	0
2022/07/21~2023/07/20	0	0	0	0	0	0	0	0
2023/07/21~2024/07/20	0	0	0	0	0	0	0	0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0	0	0	0	0	0	0	0
2022/07/21~2023/07/20	0	0	0	0	0	0	0	0
2023/07/21~2024/07/20	0	0	0	0	0	0	0	0

(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807	807	32	29	49	44	1,078	845
2022/07/21~2023/07/20	1,078	845	24	19	126	105	975	838
2023/07/21~2024/07/20	975	838	17	15	76	68	916	847

(1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7/21~2022/07/20	1	1	1	1	0	0	2	2

2022/07/21~2023/07/20	2	2	1	1	0	0	3	2
2023/07/21~2024/07/20	3	2	1	1	1	1	2	2

(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투자자 등(C-I)

(단위: 백만)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7/21~2024/07/20	0	0	3,708	3,700	0	0	3,708	3,76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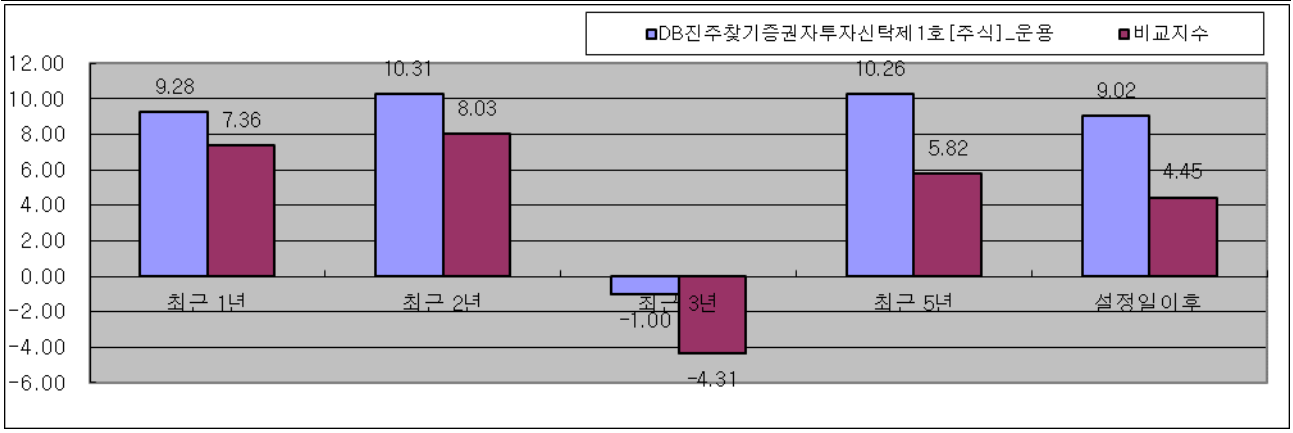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전자 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교지수는 KOSPI*95% + Call * 5%로서,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22/07/21 ~ 2024/07/20	2022/07/21 ~ 2024/07/20	2021/07/21 ~ 2024/07/20	2019/07/21 ~ 2024/07/20	
운용펀드	2006-07-21	9.28	10.31	-1.00	10.26	9.02
비교지수	2006-07-21	7.36	8.03	-4.31	5.82	4.45
수익률 변동성	2006-07-21	13.20	14.20	14.31	18.97	18.7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05-16	7.64	8.66	-2.49	8.63	5.33
비교지수	2007-05-16	7.36	8.03	-4.31	5.82	3.38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12-06	8.04	9.06	-2.12	9.46	4.14
비교지수	2017-12-06	7.36	8.03	-4.31	5.82	1.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007-05-09	-	-	-0.38	6.52	1.77
비교지수	2007-05-09	-	-	-0.25	6.10	1.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 투자자 등(C-I)	2010-04-07	1.42	0.71	0.47	0.28	0.10
비교지수	2010-04-07	1.50	0.75	0.50	0.30	0.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2007-08-06	-	-	-	-	-

비교지수	2007-08-06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07-10-16	7.55	8.58	-2.56	8.55	3.19
비교지수	2007-10-16	7.36	8.03	-4.31	5.82	2.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2007-10-23	7.34	8.36	-2.76	8.34	3.44
비교지수	2007-10-23	7.36	8.03	-4.31	5.82	2.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10-10-18	-	0.22	-7.33	-4.47	-1.65
비교지수	2010-10-18	-	0.58	-8.53	-5.21	-1.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10-10-18	-0.36	4.32	2.86	2.08	0.77
비교지수	2010-10-18	-1.30	2.98	1.98	0.83	0.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10-10-18	8.20	4.02	2.67	8.32	3.07
비교지수	2010-10-18	8.78	4.30	2.85	7.30	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010-10-18	7.55	8.57	-2.57	8.49	3.20
비교지수	2010-10-18	7.36	8.03	-4.31	5.82	2.86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2011-04-18	-	-	-	-	-
비교지수	2011-04-18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8.09	9.12	-2.07	9.31	4.91
비교지수	2014-04-22	7.36	8.03	-4.31	5.82	3.31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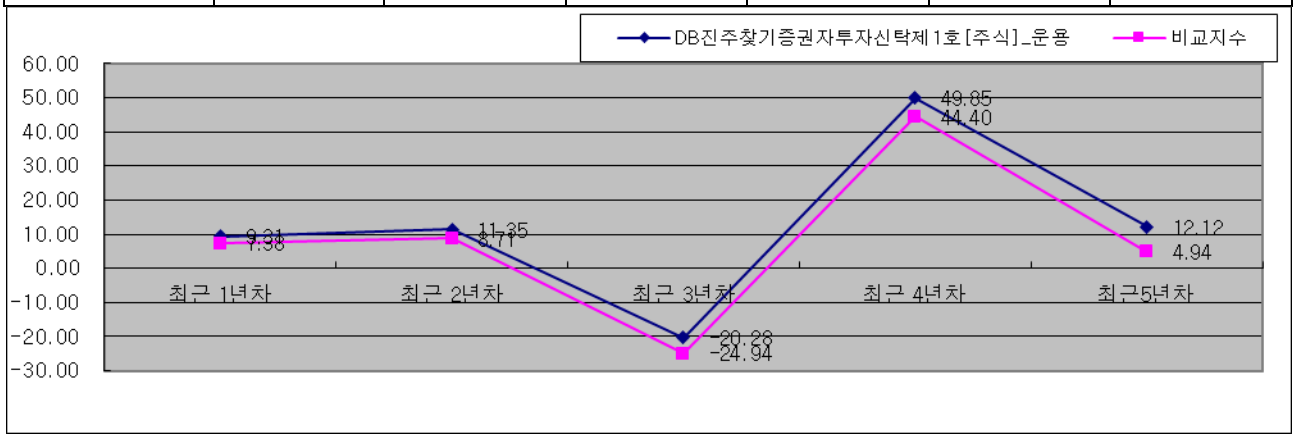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	최근5년차

		2023/07/21~ 2024/07/20	2022/07/21 ~ 2023/07/20	2021/07/21 ~ 2022/07/20	2020/07/21 ~ 2021/07/20	2019/07/21 ~ 2020/07/20
운용펀드	2006-07-21	9.31	11.35	-20.28	49.85	12.12
비교지수	2006-07-21	7.38	8.71	-24.94	44.40	4.9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7-05-16	7.66	9.70	-21.49	47.73	10.50
비교지수	2007-05-16	7.38	8.71	-24.94	44.40	4.94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7-12-06	8.06	10.10	-21.20	49.54	12.14
비교지수	2017-12-06	7.38	8.71	-24.94	44.40	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007-05-09	-	-	-1.15	38.79	-
비교지수	2007-05-09	-	-	-0.75	35.5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전문 투자자 등(C-I)	2010-04-07	1.43	-	-	-	-
비교지수	2010-04-07	1.50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랩(C-F)	2007-08-06	-	-	-	-	-
비교지수	2007-08-06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07-10-16	7.58	9.62	-21.55	47.63	10.42
비교지수	2007-10-16	7.38	8.71	-24.94	44.40	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주택마련(C-H)	2007-10-23	7.36	9.39	-21.71	47.34	10.21
비교지수	2007-10-23	7.38	8.71	-24.94	44.40	4.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10-10-18	-	0.44	-20.79	-	-
비교지수	2010-10-18	-	1.16	-24.38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10-10-18	-0.36	9.24	-	-	1.87
비교지수	2010-10-18	-1.31	7.46	-	-	-1.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10-10-18	8.22	-	-	25.41	9.94
비교지수	2010-10-18	8.80	-	-	24.71	4.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010-10-18	7.57	9.61	-21.55	47.53	10.20
비교지수	2010-10-18	7.38	8.71	-24.94	44.40	4.94
수수료후취-오프라인(B)	2011-04-18	-	-	-	-	-
비교지수	2011-04-18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8.11	10.16	-21.15	48.44	12.02
비교지수	2014-04-22	7.38	8.71	-24.94	44.40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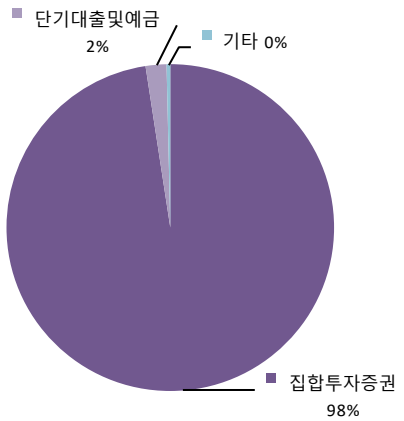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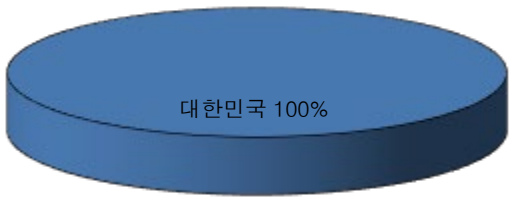
*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4.07.20 기준/ 단위: 백만,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대한민국	0	0	0	7,420	0	0	156	28	7,604
	(0.00)	(0.00)	(0.00)	(97.58)	(0.00)	(0.00)	(2.06)	(0.36)	(100.00)
자산합계	0	0	0	7,420	0	0	156	28	7,604
	(0.00)	(0.00)	(0.00)	(97.58)	(0.00)	(0.00)	(2.06)	(0.3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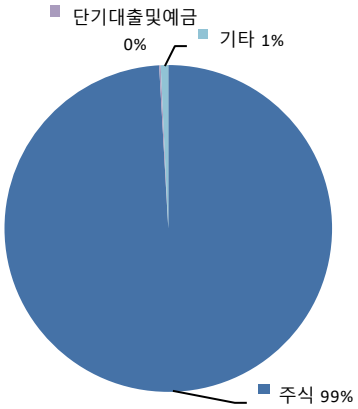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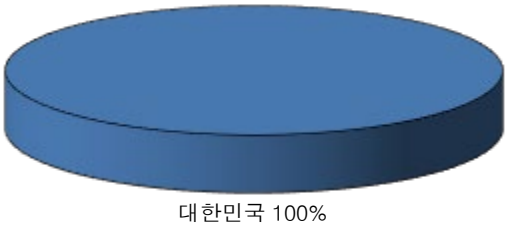


DB진주찾기증권모투자신탁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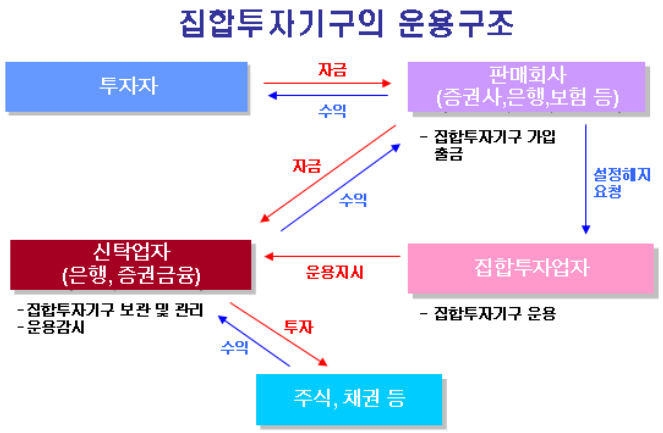
(2024.07.20 기준/ 단위: 백만,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대한민국	9,878	0	0	0	0	0	15	74	9,967
	(99.11)	(0.00)	(0.00)	(0.00)	(0.00)	(0.00)	(0.15)	(0.74)	(100.00)
자산합계	9,878	0	0	0	0	0	15	74	9,967
	(99.11)	(0.00)	(0.00)	(0.00)	(0.00)	(0.00)	(0.15)	(0.74)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DB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02-787-3700)	www.db-asset.co.kr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의 위탁

-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28기 (2023.12.31)	27기 (2022.12.31)
Ⅰ.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778,157,470	14,521,832,537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62,376,717	4,532,455,154
Ⅲ. 관계기업투자자산	7,584,982,363	4,187,960,000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7,200,000	417,200,000
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9,509,895,872	40,313,949,271
Ⅵ. 유 형 자 산	608,974,301	41,519,683
Ⅶ. 기타자산 외	5,772,930,745	1,877,210,169
자 산 총 계	70,634,517,468	65,892,126,814
Ⅰ. 기타부채	7,018,550,053	2,787,829,980
부 채 총 계	7,018,550,053	2,787,829,980
Ⅰ. 자 본 금	30,000,000,000	30,000,000,000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1,602,507	-231,602,507
Ⅲ. 이 익 잉 여 금	33,847,569,922	33,335,899,341
자 본 총 계	63,615,967,415	63,104,296,83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0,634,517,468	65,892,126,814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28기 (2023.12.31)	27기 (2022.12.31)
Ⅰ. 영 업 수 익	19,271,843,019	19,029,156,556
Ⅱ. 영 업 비 용	17,933,480,556	17,162,104,550
Ⅲ. 영 업 이 익	1,338,362,463	1,867,052,006
Ⅳ. 영 업 외 수 익	551,950,710	1,437,463
Ⅴ. 영 업 외 비 용	866,430	476,843,31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89,446,743	1,391,646,159
Ⅶ. 법인세비용	477,776,162	424,941,127
Ⅷ. 당 기 순 이 익	1,411,670,581	966,705,032

라. 운용자산규모(2024.07.22 기준 /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6,820	1,522	28,264	27,256	4,300	467	15,178	2,033	13,431	99,27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회사의 개요

신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02-2002-3000)	www.wooribank.com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하나펀드서비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11층(02-6714-4600)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KAP)	KIS 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11층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2층, 3층
연락처	02-2251-1300	02-3215-1400	02-398-3900	02-721-5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②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 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 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b-asset.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 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②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신탁업자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3. 예비투자설명서
4. 예비간이투자설명서
5. 장외파생상품 평가방법서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